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354
----------	-------

발의연월일 : 2023. 11. 13.

발 의 자 : 홍영표 · 임오경 · 강준현
양경숙 · 진선미 · 고용진
김성주 · 이수진 · 김경만
김병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성실 세무 대리를 제약하고 있음.

이에 「세무사법」상 현행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7제1항 본문 중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를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라 통지받아야 하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u>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u>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 ----- ----- <u>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라 통지받아야 하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u>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